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7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3年 12月 24日(金) 午後 2時 30分

### 議事日程 (第7次 本會議)

1. 平昌郡諸證明等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平昌郡保健支所運營支援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1 面
2. 平昌郡諸證明等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平昌郡守 提出) \_\_\_\_\_ 2 面
3. 平昌郡保健支所運營支援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平昌郡守 提出) \_\_\_\_\_ 2 面

(14시42분 개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0회 정기회도 30일간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계속된 의정활동에 한분도 빠짐없이 정열적으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3년을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報告事項

(14시44분)

○ [redacted] 사무과장 권혁승  
입니다.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 보고사항 - 끝에실음 )

○ [redacted] 사무과장 수고 하셨  
습니다.

2. 平昌郡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平昌郡守 提出)

(14시44분)

○ [redacted]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입니다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  
감면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및 면리대장이 관내에서 공부할  
열람하는 때에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조

례개정시 착오로 리반장이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바 삽입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수고 하셨  
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  
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  
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  
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平昌郡保健支所運營支援協議會條例廢  
止條例案 (平昌郡守 提出)

(14시47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평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회의회조례폐

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보건사업과장 임영빈입니다.

평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 보건지소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평창군조례 제1049호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달된 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보건소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읍면보건요원의 근무처를 종전 읍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배치하고 현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 그 책임소지를 확고히 하고 각급 보건요원을 지휘 감독하므로써 행정수행사항과 보건운영에 관한 기술업무를 일원화 하여 효율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개원이후 세번째 맞는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갈등이 증폭되었던 지난 1년여 동안을 대과없이 정열적으로 펼쳐온 의정활동이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금년에는 6회에 걸친 제도개선등의 건의를 비롯하여 조례의 재정.개정과 지난 10월 두번째로 전의원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적

극 해결하는 한편 군정의 주요사업장 확  
인과 의원연수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위  
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한해였다고 생  
각 합니다.

또한 성숙된 숙의와 토론으로 군민의 바  
램과 기대를 보다 많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  
고 자부하여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회가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과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산적되어  
우리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운 제약여건 속의  
모순을 바로 직시하고 의원여러분은 더  
한층 깊은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94년  
의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  
다. 앞으로 우리의회는 집행부와 공동  
으로 이해와 노력 그리고 연구를 해가면  
서 더욱 발전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혼  
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의정운영에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호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승적 견지에서 주민의 복리와 숙  
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여 주셨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금년에 못다이툼 소  
원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내 건승과 행운  
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93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  
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3분 폐회)

○ 出席議員

議 長	韓 榮 一
副議長	金 鍾 永
議 員	李 致 玉
議 員	李 相 薰
議 員	朴 容 泰
議 員	朱 泰 元
議 員	金 樂 雲
議 員	郭 文 春

○ 出席公務員

郡 守	鄭 鎬 敦
副 郡 守	韓 琪 洙
企 劃 室 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金 榮 柱
社 會 振 興 課 長	權 純 喆
財 務 課 長	李 永 德
社 會 課 長	張 世 德
環 境 保 護 課 長	金 學 根
產 業 課 長	金 時 漢
地 域 經 濟 課 長	朴 榮 源
畜 產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吳 興 一
建 設 課 長	洪 基 杓
民 防 衛 課 長	朴 俊 河
保 健 事 業 課 長	任 永 彬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權 赫 昇
議 事 係 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 5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 規則 第46條의 規定에  
依據 署名 捺印함.

1993年 12月 26 日

議 長	韓 榮	
議 員	李 敏	
議 員	郭 文	
事 務 課 長	權 赫	

[ 報 告 事 項 ]

○ 의안이송

- 1.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12월20일 평창군에 이송)
- 2.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에비비지출승  
인안(1993년12월20일평창군에 이송)
- 3.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  
정조례안(1993년12월21일평창군에 이  
송)
- 4.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  
지조례안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이송)
- 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이송)
- 6. 1994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이송)
- 7. 1993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이송)
- 8.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이송)
- 9. 1993행정사무감사 결과  
(1993년12월21일 평창군에 송부)

-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1993년12월20일 평창군에 이송)
- 11. 1993년도 평창군공유재산판계획 제  
2차 변경동의안  
(1993년12월22일 평창군에 이송)
- 12.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993년12월22일 평창군에 이송)

○ 대정부 건의회신

- 1. 정부의추곡수매 결정제고촉구에 관  
한 건의  
(12월20일 국회사무총장회신, 국회농  
림수산위원회 송부)